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K-OTC시장 운영규정 (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설과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)

2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K-OTC시장 운영규정 (2025/8/19 개정 · 2026/1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'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'(2025.1.)에 따라 상장폐지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K-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(가칭)를 신설하여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 - 그 밖에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, 자진 등록해제시 투자자보호장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

2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설과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(제17조의2~제17조의5 신설)
 - 유가증권 ·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을 협회가 직권으로 지정
 -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, 집합투자증권,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은 제외
 - 다만,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 충족 입증시 검토 후 지정 가능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[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요건]

구분	지정요건(지정 승인일 기준)
기본요건	① 유가증권 · 코스닥시장 상장폐지(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제외) 되었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있을 것
감사의견	③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
주식유통	④ 신규등록요건 규정 중 주식유통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인용 i) 통일규격증권, ii)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, iii) 주식 양도제한 없을 것
기업존속	⑤ 등록해제규정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인용 i) 은행 거래정지, 최종부도, ii) 타법인에 피흡수합병, iii) 해산사유 발생 ⑥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⑦ 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

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지정 해제

- 다만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중도 지정해제 및 정리 매매기간(10영업일 이내) 부여

[상장폐지지정기업부 중도 지정해제요건]

구분	중도 지정해제요건
1	은행 거래정지, 최종부도
2	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, 의견거절
3	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,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,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
4	타법인에 피흡수합병
5	해산사유 발생
6	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
7	증권시장 상장
8	주식유통관련 요건 미충족 i) 통일규격증권, ii)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, iii) 주식 양도제한 없을 것
9	기업의 계속성 또는 K-OTC시장의 건전성,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시장운영 및 해제사유 발생 등 필요시 매매거래정지 조치(제37조)

— 다만, 한시적 거래임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정지 사유 등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전 10영업일 동안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 조정

- 거래지원 종료 전 10영업일 및 정리매매기간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미적용
- 단, 감사, 액면분할 등으로 주권제출이 요구되거나 전산장애 발생 등과 같이 시장운영 상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

[상장폐지지정기업부 매매거래정지 요건]

구분	매매거래정지 사유	정지기간
1	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	1영업일간
2	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 내 미제출	제출기한의 다음날~30일내 제출일까지
3	지정해제 사유 발생(타법인에 피흡수 합병, 증권시장 상장은 제외)	해당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
4	회생절차 관련	
	가. 회생절차 개시 신청	사유 확인일~회생절차개시 결정 확인일
	나.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소집	관계인집회 2영업일 전~결과 확인일
	다.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정지 기간 연장 가능	
5	주식분할 등을 위한 주권제출 요구시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	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가 인정되는 EO까지
6	호가폭주 등 호가중개시스템 전체 장애발생 우려 시	매매거래정지 사유 해소가 인정되는 때까지
7	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	조치일
8	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1영업일간

- ☐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소속이며 거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투자유의 안내공시 · 시장조치를 매매개시일 부터 지정해제일까지 유지(제53조)
- 6개월 거래지원 종료 등으로 지정해제일까지 매매거래 가능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투자유의 안내공시
- ☐ 기공시내용 변경시 공시의무 명확화(제47조의2, 제48조 제1항 제2호, 제49조 제1항)
- 등록기업이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한 이후에도 공시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당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명확화
- ☐ 최대주주 변경 공시 관련 정비(제45조 제1항 제15호)
- 기존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외에도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시에도 이를 공시하도록 함
- ☐ 지정법인 공시 확인시점 명확화(제48조 제3항, 제16조 제4항, 제54조 제4항)
- 지정기업의 시장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정보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등록기업 공시접수 시간과 동일하게 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함
- 단,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확인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
- 등록기업 공시접수시간 규정과 동일

- 등록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(제10조 제2항, 제45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 제11호의2)
 - K-OTC 등록기업이 등록해제를 신청할 경우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
 -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함
 - 등록해제 신청 이전에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, 등록해제 신청일 당일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75%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등
 - 등록기업은 투자자 보호 사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
- 지정해제 요건 정비(제16조 제1항 제3호)
 - 지정기업이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정해제
 - 파산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지정해제 요건으로 포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